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명 변경(Class E)
 -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Class S)
 - 클래스 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명 변경 (Class 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Class E: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4. (생략) <추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Class Ce: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4. (현행과 같음) 5. <u>Class Ae :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선취 판매수수료 징구)</u> 6. <u>Class C-F :</u> 가. <u>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u> 나. <u>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u> 다. <u>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혹은 최초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u> 7. <u>Class C-P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u>

			<p>8. Class C-Pe : 온라인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p> <p>9. Class C-P2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수익증권</p> <p>10. Class C-P2e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수익증권</p> <p>11. Class 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12. Class S-R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수익증권</p>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클래스명 변경(Class 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C 수익증권 3. Class E 수익증권 4. Class S 수익증권 <p><추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C 수익증권 3. Class Ce 수익증권 4. Class S 수익증권 5. Class Ae 수익증권 6. Class C-F 수익증권 7. Class C-P 수익증권 8. Class C-Pe 수익증권 9. Class C-P2 수익증권 10. Class C-P2e 수익증권 11. Class S-P 수익증권 12. Class S-R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p>클래스명 변경 (Class E)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Class S)</p>	<p>①~② (생략)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Class C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 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점별로 차등적용한다.</p> <p>1. Class A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9.00</u>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p> <p>2. (생략) 3. Class E (생략)</p> <p>4. Class S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3.50</u>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이하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Class C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 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점별로 차등적용한다.</p> <p>1. Class A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7.00</u>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p> <p>2. (현행과 같음) 3. Class <u>Ce</u> (현행과 같음)</p> <p>4. Class S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3.00</u>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39 조(보수)	<p>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p>	<p>①~② (생략)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Class C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 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점별로 차등적용한다.</p> <p>1.~4. (생략) <추가></p>	<p>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Class C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 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점별로 차등적용한다.</p> <p>1.~4. (현행과 같음) 5. Class Ae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p>

6. Class C-F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7. Class C-P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8. Class C-Pe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75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9. Class C-P2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10. Class C-P2e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1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11. Class S-P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12. Class S-R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90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p>
<p>제 40 조(판매수수료)</p>	<p>클래스신설(Class Ae)</p>	<p>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u>선취판매수수료율</u> : 납입금액의 1% 이내 <추가> <이하 생략></p>	<p>① 판매회사는 <u>종류 A</u>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u>수익증권</u>: 납입금액의 1%<u>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u> 2. <u>Class Ae</u>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0%<u>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u>. 3. <u>Class A, Class Ae 이외의 다른 수익증권: 없음</u>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p>	<p>① 이 <u>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u>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②~③ (생략) <추가></p>	<p>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p>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20.69%	수익률 변동성 15.36%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1.가. 요약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주식 추가) (신설) (신설)	주1)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9기 0원, 8기 0원, 7기 0원) 주2)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9기 0원, 8기 0원, 7기 0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업데이트
-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Class S)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_투자비용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클래스 신설(Class Ae)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총보수 : <u>1.666%</u> 판매보수: <u>0.900%</u> 총보수·비용: <u>1.666%</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1.766% 판매보수: 1.000% 총보수·비용: 1.768%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판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1.26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총보수 : <u>1.466%</u> 판매보수: <u>0.700%</u> 총보수·비용: <u>1.466%</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1.766% 판매보수: 1.000% 총보수·비용: 1.76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내 총보수: 1.116% 판매보수: 0.350% 총보수·비용: 1.1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1.266%

		<p>판매보수: 0.500% 총보수·비용: 1.266% (생략)</p> <p>(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u>약 7년</u>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이하 생략)</p>	<p>판매보수: 0.500% 총보수·비용: 1.266% (현행과 같음)</p> <p>(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u>약 3년 1개월</u>이 되는 시점이며 <u>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3개월</u>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요약정보_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및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요약정보_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요약정보_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클래스 신설	(추가)	판매경로: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R):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 1 부.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투자신탁의 명칭(종류)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추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추가)	투자신탁의 명칭(종류)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u>수수료선취-온라인형(Ae)</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u>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추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제 2 부.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투자신탁의 명칭(종류)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추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추가)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추가)	투자신탁의 명칭(종류)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6.가.집합투 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제 2 부.6.나.종류형 구조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추가)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p>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Class S)</p>	<p>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추가)</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900% 신탁업자 보수: 0.050%</p>	<p>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R):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액의 0.50% 이내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700% 신탁업자 보수: 0.050%</p>
--	---	--	---

		<p>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추가)</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5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추가)</p> <p>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p>	<p>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u>수수료선취-온라인형(Ae)</u> <u>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u> <u>판매회사 보수: 0.350%</u> <u>신탁업자 보수: 0.050%</u> <u>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u>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5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u> <u>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u> <u>판매회사 보수: 0.030%</u> <u>신탁업자 보수: 0.050%</u> <u>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u> <u>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u> <u>판매회사 보수: 0.750%</u> <u>신탁업자 보수: 0.050%</u> <u>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u> <u>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u> <u>판매회사 보수: 0.375%</u> <u>신탁업자 보수: 0.050%</u> <u>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u> <u>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u> <u>판매회사 보수: 0.600%</u> <u>신탁업자 보수: 0.050%</u> <u>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u> <u>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u> <u>판매회사 보수: 0.310%</u> <u>신탁업자 보수: 0.050%</u> <u>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u>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p>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35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추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30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u>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2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u>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19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8.나.모투자 신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1) 투자 대상 (생략) (추가)	1) 투자 대상 (현행과 같음) 주 1)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8.나.모투자 신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1) 투자 대상 (생략) (추가)	1) 투자 대상 (현행과 같음) 주 1)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이하 생략)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0.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21.54%	수익률 변동성 18.06%
제 2 부.11.가.매입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2) 종류형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추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추가)	2) 종류형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u>수수료선취-온라인형(Ae)</u> <u>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u> <u>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최초</u> <u>납입액이 10 억원 이상인 법인 혹은 최초</u> <u>납입금액이 5 억원 이상인 개인</u> <u>(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u>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u>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온라인전용)</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u> <u>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u> <u>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사업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u> <u>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u> <u>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가입자,</u> <u>퇴직연금사업자(온라인 전용)</u>

		<p>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추가)</p>	<p>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u>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u>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u></p>
<p>제 2 부.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클래스신설(Class A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Class S)</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추가)</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u>수수료선취-온라인형(Ae)</u> <u>선취판매수수료: 납입액의 0.50% 이내</u> <u>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u> <u>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수수료: 없음</u></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90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u>1.666%</u> (추가)</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5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1.466% (추가)</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70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u>1.466%</u>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35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u>0.016%</u> 총 보수·비용: <u>1.126%</u>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5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1.2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03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0.7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75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1.5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375%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p>
--	--	--	---

		<p>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35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u>1.116%</u> (추가)</p> <p>(생략)</p> <p><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추가)</p>	<p>총 보수·비용: 1.141%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u>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6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1.366%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u>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31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1.07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u>0.300%</u>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u>1.066%</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u>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20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0.966%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u>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판매회사 보수: 0.190% 신탁업자 보수: 0.0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6% 총 보수·비용: 0.956% (현행과 같음)</p> <p><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p>
--	--	---	---

		(이하 생략)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u> <u>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 과세	클래스신설(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Class S-R)	(추가)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p>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p> <p>세액공제</p> <p>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p>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연금수령시 과세</p> <p>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p> <p>분리과세한도</p> <p>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p> <p>연금외수령시과세</p> <p>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p> <p>해지가산세</p> <p>없음</p> <p>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p> <p>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	--	--	--

			<p>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년 1월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p>
--	--	--	---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채투자시 채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등에 따라 과세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p>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p> <p>※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 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p>
제 3 부.1.가.요약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p>(주식 추가)</p> <p>(신설)</p> <p>(신설)</p>	<p>주1)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19기 0원, 18기 0원, 17기 0원)</p> <p>주2)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19기 0원, 18기 0원, 17기 0원)</p> <p><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p> <p><주식의 매매회전율></p>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p>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p>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및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 클래스 신설(Class Ae)
-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Class A) 클래스 신설(Class Ae) 클래스명 변경(Class E -> Class Ce)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총보수 : <u>1.666%</u> 판매보수: <u>0.900%</u> 총보수·비용: <u>1.666%</u>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총보수 : <u>1.466%</u> 판매보수: <u>0.700%</u> 총보수·비용: <u>1.466%</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u>1.766%</u> 판매보수: <u>1.000%</u> 총보수·비용: <u>1.768%</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u>1.766%</u> 판매보수: <u>1.000%</u> 총보수·비용: <u>1.768%</u>
		(추가)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내 총보수: <u>1.116%</u> 판매보수: <u>0.350%</u> 총보수·비용: <u>1.116%</u>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E) 판매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없음

		<p>총보수: 1.266% 판매보수: 0.500% 총보수·비용: 1.266% (생략)</p> <p>(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u>약 7년</u>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이하 생략)</p>	<p>총보수: 1.266% 판매보수: 0.500% 총보수·비용: 1.266% (현행과 같음)</p> <p>(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u>약 3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3개월이 되는 시점</u>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p>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및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p> <p>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p>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클래스 신설	(추가)	<p>판매경로:</p> <p>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퇴직연금(P2,R):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